

<h1 style="margin: 0;">보도자료</h1> <p style="margin: 0;">2012. 1. 30.</p>	 <h2 style="margin: 0;">대 법 원</h2> <p style="margin: 0;">Supreme Court of Korea</p>	
	담당부서	양형위원회
	담당자	운영지원단장 최형표 (☎ 3480-1924)
	공보관실 ☎ 3480-1451	

##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결과

양형위원회는 2012. 1. 30. 16:00 대법원 1601호 회의실에서 제39차 전체회의를 열어 『증권·금융, 교통, 폭력범죄 양형기준안』을 의결하고, 『성범죄 수정 양형기준』을 최종 의결

### ① 증권·금융범죄 양형기준안 주요 내용

#### ○ 범죄 유형 분류

- ‘**증권범죄**’는 ‘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’위반 범죄를 중심으로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범죄(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, 시세조종행위, 부정거래행위)와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범죄(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/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위반, 허위재무제표 작성·공시, 회계정보 위·변조)로 분류하여 양형기준 설정
- ‘**금융범죄**’는 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’이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부패범죄를 중심으로 양형기준 설정

#### ○ 주요 특징

- 다수의 일반투자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고,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종래 법원의 양형 관행보다 형량범위를 대폭 상향
- 자본시장질서를 교란하여 막대한 이득을 취득하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범죄에 대하여 사기범죄에 준하여 더욱 엄정한 형량 범위 설정
- 특히,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주가조작 등 ‘시세조종행위’ 중에서 ‘이득액 또는 회피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이고,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’는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실형권고사유로 명시함

## ② 교통범죄 양형기준안 주요 내용

### ○ 범죄 유형 분류

- 일반 교통사고 :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 구분하여 형량범위 설정
- 교통사고 후 도주 : 치상 후 도주, 치상 후 유기 도주, 치사 후 도주, 치사 후 유기 도주로 구분하여 형량범위 설정

### ○ 주요 특징

- 교통사고 범죄 중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는 범죄는 제외하고 가벌성이 높은 대인 교통사고 범죄를 중심으로 양형기준 설정

## ③ 폭력범죄 양형기준안 주요 내용

### ○ 범죄 유형 분류

- 상해, 폭행, 협박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설정
- 원칙적으로 범행의 결과를 중심으로 유형을 분류하되, 각종 특별법에서 가장 처벌하고 있는 행위유형은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더 높은 형량범위 설정

### ○ 주요 특징

- 잔혹한 범행수법으로 인한 범행이나 신체 또는 정신 장애,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특별가중인자로 반영
-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특별가중인자로 반영

## ④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최종 의결

- 2011. 12. 19. 위원회 제38차 회의에서 의결한 “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안”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, 일반 국민 및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최종 의결
- 개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추어 2012. 3. 16.부터 시행 예정
- 주요 특징
  - ① 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을 신설하고 엄정한 형량범위 설정
  - ②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

③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에 실행 권고사유 신설

④ 성범죄에 있어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(피해자와의 합의)의 요건 엄격화

5 향후 일정

○ 증권·금융, 교통, 폭력범죄 양형기준안 관련

- 2012. 2. : 양형기준안에 대한 관계 기관 의견 조회

- 2012. 3. :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2회로 나누어 공청회 개최

- 2012. 4. ~ 5. : 양형기준 최종 의결 예정

○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안 관련

- 전문위원의 추가 검토와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다음 위원회 회의에서 의결 예정

○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관련

- 2012. 2. 10.경 :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관보 게재(시행은 2012. 3. 16.)

※ 다음 위원회 회의는 [2012. 3. 5.\(월\) 16:00](#) 개최 예정

# I. 증권·금융범죄 양형기준안 주요 내용

## 1 유형별 형량기준

### 가. 증권범죄

(1)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(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, 시세조종 행위, 부정거래 행위)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1억원 미만	- 1년	6월 - 1년6월	1년 - 2년6월
2	1억원 이상, 5억원 미만	10월 - 2년6월	1년 - 4년	2년6월 - 6년
3	5억원 이상, 50억원 미만	1년6월 - 4년	3년 - 6년	4년 - 7년
4	50억원 이상, 300억원 미만	3년 - 6년	5년 - 8년	6년 - 9년
5	300억원 이상	5년 - 9년	6년 - 10년	8년 - 13년

※ 시세조종행위로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고,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는 원칙적 실형 권고

(2)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	- 6월	4월 - 10월	8월 - 1년6월
2	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/허위 재무제표 작성·공시/회계정보 위·변조	4월 - 10월	8월 - 1년4월	1년 - 2년6월

### 나. 금융범죄

(1)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·알선수재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1,000만원 미만	- 6월	4월 - 1년	8월 - 2년
2	1,000만원 이상, 3,000만원 미만	8월 - 2년	1년 - 3년	2년 - 4년
3	3,000만원 이상, 5,000만원 미만	2년6월 - 4년	3년 - 5년	4년 - 6년
4	5,000만원 이상, 1억원 미만	3년6월 - 6년	5년 - 7년	6년 - 8년
5	1억원 이상, 5억원 미만	5년 - 8년	7년 - 10년	9년 - 12년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6	5억원 이상	7년 - 10년	9년 - 12년	11년 이상, 무기

(2)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3,000만원 미만	- 6월	4월 - 10월	6월 - 1년6월
2	3,000만원 이상, 5,000만원 미만	6월 - 1년	10월 - 1년6월	1년 - 3년
3	5,000만원 이상, 1억원 미만	1년 - 2년	1년6월 - 2년6월	2년 - 4년
4	1억원 이상	2년 - 3년	2년6월 - 3년6월	3년 - 5년

(3)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3,000만원 미만	- 6월	4월 - 10월	6월 - 1년6월
2	3,000만원 이상, 5,000만원 미만	6월 - 1년	10월 - 1년6월	1년 - 3년
3	5,000만원 이상, 1억원 미만	1년 - 2년	1년6월 - 2년6월	2년 - 4년
4	1억원 이상	2년 - 3년	2년6월 - 3년6월	3년 - 5년

2 주요 특징

○ 증권범죄에 관한 엄정한 형량범위 설정

- ‘증권범죄’는 다수의 일반투자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고, 이러한 손실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손상하여 자발적인 시장참여를 회피하게 함으로써 결국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범죄임
- 이와 같은 증권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종전 법원의 양형 관행보다 형량범위를 대폭 상향
- 특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, 시세조종행위, 부정거래행위 등 자본시

장의 공정성 침해범죄에 대해서는 사기범죄에 준해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화된 형량범위 설정

※ 횡령·배임범죄와 사기범죄 양형기준 비교

유형	횡령·배임			일반사기			
	구분	감경	기본	가중	감경	기본	가중
1	1억 미만	-10월	4월-1년4월	10월-2년6월	-1년	6월-1년6월	1년-2년6월
2	1억 이상, 5억 미만	6월-2년	1년-3년	2년-5년	10월-2년6월	1년-4년	2년6월-6년
3	5억 이상, 50억 미만	1년6월-3년	2년-5년	3년-6년	1년6월-4년	3년-6년	4년-7년
4	50억 이상, 300억 미만	2년6월-5년	4년-7년	5년-8년	3년-6년	5년-8년	6년-9년
5	300억 이상	4년-7년	5년-8년	7년-11년	5년-9년	6년-10년	8년-13년

- 특히,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주가조작 등 ‘시세조종행위’ 중에서 ‘이득액 또는 회피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이고,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’는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실형권고사유로 명시함

## II. 교통범죄 양형기준안 주요 내용

### 1 유형별 형량기준

#### 가. 일반교통사고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교통사고 치상	- 6월	4월 - 10월	8월 - 1년6월
2	교통사고 치사	4월 - 10월	8월 - 1년6월	1년 - 3년

☞ 징역형 또는 금고형

#### 나. 교통사고 후 도주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치상 후 도주	6월 - 10월	8월 - 1년6월	1년 - 3년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2	치상 후 유기 도주	1년6월 - 2년6월	2년 - 4년	3년 - 5년
3	치사 후 도주	2년6월 - 4년	3년 - 5년	4년 - 6년
4	치사 후 유기 도주	3년 - 5년	3년6월 - 6년	5년 - 8년

## 2 주요 특징

- 교통사고 범죄 중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는 범죄는 제외하고 가벌성이 높은 대인 교통사고 범죄를 중심으로 양형기준 설정
- 교통사고의 결과, 도주의 태양에 따라 권고형량범위 차등 설정

## III. 폭력범죄 양형기준안 주요 내용

### 1 유형별 형량기준

#### 가. 일반적인 상해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일반상해	2월 - 1년	4월 - 1년6월	6월 - 2년
2	중상해	6월 - 1년6월	8월 - 2년	10월 - 3년
3	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	1년6월 - 3년	2년 - 4년	3년 - 6년

#### 나. 상습상해 · 누범상해 · 특수상해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상습상해·누범상해·특수상해	1년 - 2년	1년6월 - 3년	2년 - 4년
2	상습특수상해·누범특수상해	1년6월 - 3년	2년 - 4년	3년 - 5년

#### 다. 폭행범죄

유형	구 분	감경	기본	가중
1	일반폭행	8월 이하	2월 - 10월	4월 - 1년
2	폭행치상	2월 - 1년6월	4월 - 2년	6월 - 3년
3	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	1년 - 2년	1년6월 - 3년	2년 - 4년
4	상습·누범·특수폭행	4월 - 1년2월	6월 - 1년10월	8월 - 2년4월

#### 다. 협박범죄

유형	구 분	감경	기본	가중
1	일반협박	8월 이하	2월 - 1년	4월 - 1년6월
2	운전자 협박치상	8월 - 1년6월	1년 - 2년	1년6월 - 3년
3	운전자 협박치사	1년 - 2년	1년6월 - 3년	2년 - 4년
4	상습·누범·특수협박	4월 - 1년	6월 - 1년6월	8월 - 2년

### 2 주요 특징

- 잔혹한 범행수법으로 인한 범행이나 신체 또는 정신 장애,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특별가중인자로 반영
-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특별가중인자로 반영

## IV.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최종 의결

### 1 유형별 형량기준

#### 가. 장애인(13세 이상) 대상 성범죄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의제추행	- 10월	8월 - 2년	1년6월 - 3년
2	의제간음/강제추행	1년6월 - 3년	2년6월 - 5년	4년 - 6년
3	강제유사성교	2년6월 - 5년	4년 - 7년	6년 - 9년
4	강간	4년 - 7년	6년 - 9년	8년 - 12년

## 나.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의제강제추행	- 10월	8월 - 2년	1년6월 - 3년
2	의제강간	1년6월 - 3년	2년6월 - 5년	4년 - 6년
3	강제추행	2년6월 - 5년	4년 - 7년	6년 - 9년
4	강제유사성교	4년 - 7년	6년 - 9년	8년 - 12년
5	강간	6년 - 9년	8년 - 12년	11년 - 15년

## 2 주요 내용

- 2011. 12. 19. 위원회 제38차 회의에서 의결한 “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안”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, 일반국민 및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최종 의결
- 개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추어 2012. 3. 16.부터 시행 예정
- 특징
  - ① 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을 신설하고 엄정한 형량범위 설정
  - ②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
  - ③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에 실형 권고사유 신설

※ 실형 권고사유

- ① 13세 미만 대상 강간, 강제유사성교 또는 장애인 대상 강간
- ② 강도강간, 특수강도강제추행
- ③ 3인 이상 피해자 대상 계속적·반복적 범행
- ④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

④ 성범죄에 있어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(피해자와의 합의)의 요건 엄격화

※ 특별감경인자로서의 처벌불원의 요건

-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,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,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·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.
- ① 피고인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 등에 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를 한 경우나, ② 피해자가 미성년자, 장애인,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.
- 피해자가 미성년자, 장애인,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,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, 내용,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,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.

## V. 향후 일정

### ① 증권·금융, 교통, 폭력범죄 양형기준안 관련

#### 가. 관계 기관에 대한 의견 조희

- 2012. 2. 국회, 법원, 검찰, 대한변협 등 38개 유관기관에 이번에 새로 의결한 4개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진행하고, 수렴된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여 양형기준안 수정 예정

#### 나. 공청회 개최

- 2012. 3. 중에 2회로 나누어 공청회 개최 예정

#### 다. 양형기준 최종 의결

- 관계기관 의견수렴 결과, 공청회 결과를 반영하여 양형기준안을 일부 수정한 후 2012. 4. ~ 5.경 증권·금융, 교통, 폭력범죄 양형기준 최종 의결 예정

### ②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안 관련

- 당초 오늘 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었으나, 일부 미해결 쟁점이 남아 전문위원의 추가 검토와 소위원회 논의 거친 후 다음 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결정

### ③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관련

- 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(양형위원회 규칙 제6조)
- 2012. 2. 중에 “성범죄 수정 양형기준” 행정안전부를 통하여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일반에 공개할 예정
- 개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추어 2012. 3. 16.부터 시행 예정